

dr

Draft Resolution

10 MUC/DR. 21 December 2021 Original :Korean

Commission

이주노동자 및 재외국민의 인 권 보장을 위한 방안

Submitted by

베트남

Co-sponsored by

아랍 에미리트, 일본, 중국

이주 노동자 및 재외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본 협의체는

이주 노동자 및 재외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토의를 통해 국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에 긍정을 표하는 바이며,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의체 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국 외에 뜻을 같이 하는 3개국이 모여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각 국에서 이주 노동자와 재외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공유를 통해, 범세계적으로 이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산하 기구의 개입 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조적인 태도로 평화적인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인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입장 하에,

- 1. 양국의 이주민 권리를 보호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위하여.
 - 가. 양국간의 문화를 조사하고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문화를 교류하도록 하기 위해 유네스코 산하에 협의체를 결성하고,
 - 1) 각 정부는 교육 전문가단을 조직하며,
 - 2) 전문가단을 마련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의 금융적 지원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며,
 - 3) 각 국가에 이주민들에게 이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역사, 정치 제도, 사회 관습 교육을 제공하며,
 - 4) 이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주민 문화 교육을 자국민 외 본국 내 거주 비율이 높은 이주민 국가에 관한 문화 교육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며,
 - 나. 국가 간의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위원회의 개 입 및 주최 하에 국가 간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 1) 해당 협상의 주체는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모든 국가와 일부 중립국을 대상으로 하며,
 - 2) 주체 국가들은 해당 교류 행사를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문화다양 성을 인정해주며,
 - 3) 교류 행사에 각 국가마다의 문화 전문가단을 대표로 보내 교류 행사 방식을 가르치며, 행사 중에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규칙을 제정하며,
 - 4)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문화 교류 행사의 날을 지정해 행사 기간은 일주일로 설정하고 문화 교류 행사가 정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 5) 문화 교류 행사가 공정과 관용의 태도 하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을 파견하며
 - 다. 이 과정에서 자국민 우선 주의를 최소화하고 이주민들에게도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노력해야 하며,
 - 1) 자국민들만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할 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른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 2) 각 국가에서 조사기관을 설치해 정책을 평가하도록 하고, 조사기관 설치가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의 조사단 파견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 3)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며, 남용할 경우 남용 횟수에 따라 처벌을 실시하며,
 - 4) 이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하며,
- 2.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며,

- 가. 컨퍼런스 콜을 개최하여 이주 노동자의 작업 현장에 대해 지역 간, 국가 간 회의를 가지고,
- 1) 국가 기관 쪽에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안전 위생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별적인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 2) 위의 파견된 감독관들이 잘 감시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인권 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을 모집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며,
- 3) 시민단을 통해 감독관들의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시 경고를 받고 3 번 이상 누적되면 감독관 자격을 박탈하며 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 나. 사업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논의하며,
- 1) 논의된 정책으로 기업들은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 2) 논의된 정책은 기업들의 이익이 아닌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며.
- 3) 기업 간 올바르지 않은 견제가 발견될 시 기업은 국가 기관의 감시를 받아 야 하며 발견 즉시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3개월가 금하며.
- 다. 추가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정기적인 국제 포럼을 개 최하며,
- 1)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회원국 이외의 국가도 참여 가능하며,
- 2) 포럼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회원국을 위해 포럼은 방송으로 중계하며
- 3) 포럼의 주제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 4) 재외국민과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 보호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원할 수 있 도록 각 국가와 유네스코 간 유연한 소통을 보장해야 하며.
- 5) 제시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어야 하며.
- 3. 이주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 가.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 1) 임금차별, 재난지원금 배제 차별 등과 같은 차별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등하게 대우하며,
 - 2)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을 이주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

하며,

- 3) 각 국의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에 게 똑같이 적용하여 이주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며.
- 나. 각 국에 노동 고용부를 설치하고,
- 1)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며,
- 2) 유네스코의 지원 아래 근로시간 단축 및 유급휴가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 3) 상담센터를 설치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 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 4) 외국인 노동자센터를 설치하여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현지어 및 생활법률을 익힐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